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매뉴얼

- (관리대상)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
 - * (사회참여지원부) 공익활동·사회서비스형·재능나눔활동 (자립지원부) 시장형사업단
- (관리기간) 2019. 1. 1. ~ 12. 31.(연중)
- (관리유형)
 - 행복e음(사회보장정보원)과 차세대시스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격변동 정보 조치 및 관리
 - * 참여자 성명 불일치 및 주민등록번호 상이자 등 오프라인 관리
 - 타재정일자리 중복참여자(한국고용정보원)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심자 (국민건강보험공단) 관리

<부적격·부정수급 관리유형>

관리유형	
가. 자격변동관리 보장변동	
* 참여자 불일치 데이터 관리	인적변동
나. 타재정일자리 중복침	함여 관리
① 5개 사업 온라인 관련	긔 *
② 5개 사업 외 오프라	인 관리
다. 건강보험 직장가입	관리

연계	시기
차세대시스템(사회보장정보원 연계) *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오프라인 관리	매월(상시)
① 차세대시스템(사회보장정보원 연계) ② 일모아시스템(한국고용정보원)	매월(상시)
차세대시스템(국민건강보험공단)	연 6회/3회**

- * 온라인관리 대상사업 :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, 장애인행정도우미, 공공산림가꾸기, 산림 보호지원, 노인공익활동지원(자활근로)
- **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점검은 공익활동 연 6회, 재능나눔 활동 3회 진행 예정, '19년도의 경우 사업 조기집행을 감안하여 점검횟수 증가 검토 중
- (조치방법) 매월 실적 마감일까지 사후관리 조치 필수
 - * 사후관리 미조치 시 평가 반영 및 수행기관 패널티(기관주의 등) 적용
 - **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점검은 별도 계획에 따라 조치 실시

<변동유형별 시스템 활용 메뉴>

점검유형		활용 메뉴		
		공익활동·시장형사업단	재능나눔활동	
	보장·인적변동	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관리	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조치	
자격변동	참여자 자격미달	사후관리-자격정보 의심자 관리	사후관리-자격정보 의심자 관리	
	타재정일자리재정일자리	사후관리-중복수급자관리(연계)	사후관리-중복수급자관리	
		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관리	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조치	
중복참여 1	노인일자리 내 중복확인	사후관리-중복참여 의심자관리	사후관리-중복참여자관리	
건강보험 직장가입		사후관리-건강보험자격사항관리	사후관리-건강보험자격사항관리	

< 2018년·2019년 부적격 및 부정수급 비교표 >

구분	2018년	2019년
부적격자 관리	○ 부적격자 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포함)	○ 부적격자 - 아래와 같이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하는 일자리사업(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에 참여하는 경우 ·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·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(근무)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·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
부정수급 유형	○ 부정수급 유형 - ⑥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(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 업 포함)에 중복 참여하여 활 동비(임금)를 수령한 경우	○ 부정수급 유형 - 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 리사업과 참여시간이 중복되어 활동비 (임금)를 수령한 경우(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
부정수급 제재조치	○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부정 한 방법으로 활동비(또는 임 금)을 수령한 경우 해당시점 부터 지급 된 활동비(또는 임 금) 환수 ○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 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 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	 ○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(또는 임금)을 수령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(또는 임금) 환수 ○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

변동유형별 조치방법 요약

변동유형	구분		조치방법	
		기	초생계·의료급여 보장책정	
			기초연금 보장중지	부적격
			장기요양 등급판정	
	중복사업	참여기간0	중복되지 않는 경우	적격
	자격책정		│ 중복 되지만 활동비(임금)를 미수령한 경우	부적격
	71770		│ 중복 되며, 활동비(임금)를 수령한 경우	부정수급
			난과 활동일이 겹치는 경우	부정수급
자격변동	출·입국	,	간 내 활동일지 허위작성)	1016
		출입국기간	上과 활동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	적격
		ļ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·일 변경한 경우 포함)	1 -1
	교정시설		입·퇴소 기간과 활동일이 겹치는 경우	부정수급
	입·퇴소	,	입·퇴소 기간에 활동일지 허위작성)	1010
		교정시설	입·퇴소 기간과 활동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	적격
			사망	적격
			주민등록번호 변경	적격
			간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	적격
		l리사업간	활동비(임금)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	부적격
		여한 경우	활동비(임금)을 수령한 경우	부정수급
타재정		 리사업 과	활동일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	적격
일자리		자리사업	활동일이 중복되는 경우	부적격
		참여 하고	(시간이 안 겹치는 경우)	
		: 경우	활동일과 시간이 중복 되는 경우	부정수급
			재정일자리사업 (2개)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	부적격
		여기간과	①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,	
		가입기간이	② 지역가입자(세대주, 세대원)	적격
	중목되지	않는 경우	③ 임의계속가입자	
			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중 자체사업단 가입자	적격
-1-111-1			참여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	부적격
건강보험		-1-1-1-1	실제 활동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	1 1 1
직장가입		여기간과	참여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	부정수급
		가입기간이	실제 활동시간이 중복되는 경우	
	숭목되	는 경우	 건강보험 가입 사업이	부적격
				or 부정수급
			'(예시) 공공근로 등	* 타재정일자리
				조치방법 참조

- * 온라인관리 대상사업: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, 장애인행정도우미, 공공산림가꾸기, 산림보호 지원, 노인공익활동지원(자활근로)
- **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점검은 공익활동 연 6회, 재능나눔 활동 3회 진행 예정, '19년도의 경우 사업 조기집행을 감안하여 점검횟수 증가 검토 중

가. 자격변동

○ (관리항목)

- 보장변동 : 기초생계급여·의료급여 보장책정, 기초연금보장중지, 장기 요양보험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판정
- 인적변동 : 해외 출·입국자, 교정시설 입·퇴소자, 사망, 주민등록번호 변경, 성명변경, 자격 중복책정* 등
 - * (자격 중복책정) 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등록되었으나, 실제 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은 참여자

○ (조치절차)

구분	절차	내용
개발원	자격변동 ▶ 데이터 연계·표시	- 행복e음↔차세대시스템 자격변동 데이터 연계 - 차세대시스템 참여자 자격변동 데이터 표시 * (공익·사회서비스·시장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관리, 자격정보 의심자 관리 ** (재능나눔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조치
•		
수행기관	자격변동 사실 ▶ 확인·조치 및 조치결과 입력	- 차세대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자격변동 등 사실 확인 - 참여자 자격변동에 대한 수행기관 조치결과 입력 * (공익·사회서비스·시장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관리, 자격정보 의심자 관리 ** (재능나눔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조치 -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사실 지자체 통보 - 필요시 참여자 사업 참여중단 및 환수 조치 등 * 조치방법 참조

○ (조치방법)

구분		조치방법
기초생계·의료급여 보장책정		- (부적격) 참여자 중도포기 조치
1-0 1 1-0 10		* 참여자 자격변동 데이터 수신일자기준 이후 활동에 대한
기초연금 보장중지		활동비 지급 불가
•		** 부적격으로 중도포기(사업참여 중단)시 동일 사업 재참여 불가
장기	기요양 등급판정	*** 참여자 사망에 의한 기초연금 보장중지는 적격에 해당
	<u></u> ₹101717101	**** 재능나눔활동은 기초연금 보장중지 무관
	참여기간이	- (적격) 정당참여
	중복되지 않는 경우 참여기간이 중복되지만	(법원건) 단테성도 지상 조트프킨 포함
		- (부적격) 당해연도 사업 중도포기 조치
	활동비(임금)를	* 부적격으로 중도포기(사업참여 중단)시 동일 사업 재 참여 불가
중복사업	미수령한 경우	- <mark>(부정수급)</mark> 당해연도 사업 중도포기 조치 및 익년도 사업
자격책정		참여 제한 부정수급 발생기간 활동비(임금) 전액 환수
	참여기간이 중복되며,	* 참여자 부정수급액 미반납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
	활동비(임금)를	** 사회서비스형·시장형사업단에 한해 근무사실이 명백한
	수령한 경우	경우 임금은 지급
		- 차세대시스템-참여자관리-사업제한 등록(붙임4) 참조
		- (부정수급) 당해연도 시업 중도포기 조치 및 익년도 시업
		참여 제한 부정수급 발생기간 활동비(임금) 전액 환수
	출입국기간과	* 참여자 부정수급액 미반납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
	활동일이 겹치는 경우	** 증빙자료(출입국확인서, 항공표, 여권 등) 구비 필수
	(출입국기간 내	*** [붙임2] 출입국 조치방법 및 증빙자료 구비안내 참조
출·입국	활동일지 허위작성)	*** 해외출입국 기간만 활동비를 환수하고 계속참여 시키는
		<u> 것은 불가</u>
	호이크리키키 힘드이어	- 차세대디스템 <u>-참여자관리-사업제한 등록[붙임4] 참조</u>
	출입국기간과 활동일이	- (적격) 정당참여 - 자리 - (추워크립의 사람
	경치지 않는 경우	* 증빙자료(출입국확인서, 항공표, 여권 등) 구비 필수
	(시전 활동일 변경한 경우 포함) 교정시설 입·퇴소 기간과	** [붙임2] 출입국 조치방법 및 증빙자료 구비안내 참조 - (<mark>부정수급</mark>) 당해연도 사업 중도포기 조치 및 익년도 사업
		참여 제한 부정수급 발생기간 활동비(임금) 전액 환수
교정시설	활동일이 겹치는 경우	
	(교정시설 입·퇴소 기간에 활동일지 허위작성)	* 참여자 부정수급액 미반납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
입·퇴소	교정시설 입·퇴소	- 차세대시스템-참여자관리-사업제한 등록(붙임4) 참조
	기간과 활동일이	- (적격) 정당참여
	기신과 필등교이 경치지 않는 경우	(¬¬/ 000~1
		- (적격) 중도포기 조치
	. 10	(11/0441 47)

구분	조치방법
	- (적격) 정당참여
	- 주민등록번호 변경요청서 [붙임4] 작성 후 송부
	* 수행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오입력한 경우는 변경 불가
주민등록번호 변경	** 오입력의 경우 참여자를 새로 등록 및 자격연계 재실시
	(자격연계 실시 후 부적격참여자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
	즉시 중도포기 조치)
	***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·방법 [붙임6] 참조

- (대상자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방법)
 - 공익활동・사회서비스형・시장형사업단
 - ①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관리-2019년-조회 클릭



- ② 조치유형, 조치완료, 환수여부, 환수상태, 환수대상기간(시작), 환수대상 기간(종료), 환수금액, 조치내용란에 결과 입력
 - * 환수여부 체크시 환수대상기간(시작), 환수대상기간(종료), 환수금액 필수 입력
 - * 조치일자는 데이터 저장시 자동 입력



- 재능나눔 활동

① 재능나눔 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조치-2019년-조회 클릭



- ② 조치유형, 조치완료, 환수여부, 환수여부, 환수금액, 환수일자, 조치내용란에 결과 입력
- * 조치일자는 데이터 저장시 자동 입력



나. 재정일자리 중복참여

○ (관리방법)

구분	온라인관리	오프라인관리
연계절차	한국고용정보원 →사회보장정보원→개발원	한국고용정보원→개발원
관리방법	차세대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를 통한 타재정일자리사업 중 온라인 관리	온라인 관리 사업 외 타재정일자리사업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확인
대상사업	5개 사업*	5개 사업 외 타재정일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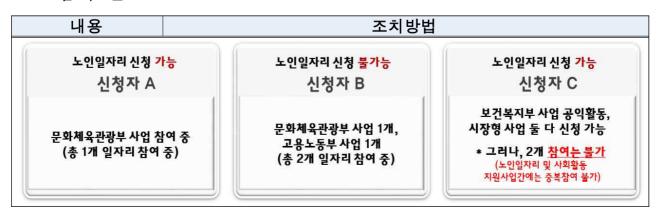
- * (온라인 관리사업)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, 장애인행정도우미, 공공산림가꾸기, 산림보호지원단, 노인 공익활동지원(자활근로)
- ** 타재정일자리사업 1개까지 중복 참여 가능하나 단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

○ (관리유형)

구분	내용
타재정일자리	- 타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비를 받은 경우 * (공익·사회서비스·시장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중복수급자 관리(연계)에서 확인 및 조치
중복참여 	** (재능나눔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중복수급자관리에서 확인 및 조치
중복사업	- 타재정일자리 사업에 등록되었으나, 실제 활동비를 받지 않은 경우
자격책정	*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 관리에서 확인 및 조치
노인일자리	- 노인일자리사업 내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
사업 내	* (공익·사회서비스·시장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중복참여 의심자 관리에서 확인 및 조치
중복참여	** (재능나눔)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중복참여자관리에서 확인 및 조치

○ (조치방법)

- 참여 전



- 사업 참여 중

내용	조치방법	
일자리간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	- (적격) - (예시) 노인일자리사업 참여(1~10월), 타재정일자리 참여(11월~12월)	
노인일자리사업간 중복 참여 한 경우	활동비(임금)을 - (부적격) 수령하지 - (예시) 공익활동 참여(3월), 시장형사업단 참여 않은 경우 (3월) → 활동비 <u>미수령</u>	
	활동비(임금)을 <mark>수령한 경우</mark> - (부정수급) - (예시) 공익활동 참여(3월), 시장형사업단 참여 (3월) → 활동비 <u>수령</u>	
	활동일이 - (적격) 중복되지 않는 - (예시) 노인일자리사업(월·수·금), 문체부사업 경우 (화·목) 참여	
노인일자리사업과 타재정일자리사업 (1개)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	활동일이 중 <mark>복되는 경우</mark> (시간이 안 겹치는 경우) - (부적격) - (예시) 노인일자리사업(월· <u>수</u> ·금), 문체부사업 (<u>수</u> ·금) 참여	
	활동일과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- (부정수급) - (예시) 노인일자리사업(월 09:00~12:00), 문체부 사업(월 11:00~13:00) 참여	
노인일자리사업과 타재정일자리사업 (2개)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	- (부적격) - (예시) 노인일자리사업 1개+타재정일자리사업 2개 ⇨ 총 3개 사업 참여	



적격	- 계속참여
부적격	- 참여자 중도포기 조치 * 중복참여 의심자 명단(시스템) 게시일 기준 이후 활동비 지급 불가 ** 부적격으로 사업 중도포기시 동일 사업 재참여 불가. 단, 자격 포기 후 재참여시 타사업단으로 참여 가능(참여자 추가 등록 후 연계 자격 재확인) □ 기존 참여 사업단의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사업도 참여 가능 *** 타재정일자리사업(1개) 포기 후 노인일자리사업 재참여시 [참여자 추가 등록]-[참여자 자격 재연계] 후 가능
부정수급	 참여자 중도포기 조치 및 <u>부정수급 기간</u> 활동비(임금) 환수 * 참여자 부정수급액 미반납시 5년간 사업참여 제한 ** 사회서비스형·시장형에 한해 근무사실이 명백한 경우 임금은 지급 [차세대시스템]-[참여자관리]-[사업제한 등록] 제한방법 [붙임4] 참조

* 단, 타재정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 사업(공공근로 등)은 중복참여 불가

○ (조치절차)

구분		온라인 관리 온라인	오프라인 관리 오프라인
개발원	•	- 중복참여 의심자 온라인 연계	-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중복참여 의심자 명단 확인 후 시·도/위탁기관 송부 및 조치 요청
]		
시·도 /위탁기관	>	- 해당없음	- 중복참여 의심자 명단 시·군·구 송부 및 조치 요청 * 재능나눔 활동은 수행기관으로 송부
	J		
시·군·구	•	- 해당없음	- 중복참여 의심자 명단 해당 수행기관 송부 및 조치 요청
	_		
수행기관	>	- 중복참여 의심자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* (공익활동·사회서비스형·시장형) * * (공익활동·사회서비스형·시장형)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	- 중복참여 사실 확인 및 조치 - 조치결과 시·군·구 송부 * 재능나눔 활동은 위탁기관으로 송부
•	_		
시·군·구	•	- 해당없음	- 조치결과 취합 및 시·도 송부
•	7		
시·도 <i>/</i> 위탁기관	•	- 해당없음	- 조치결과 취합 및 개발원 송부

- (대상자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방법) [문라인]
 - 공익활동 및 시장형사업단
 - ① [차세대시스템]-[사후관리]-[중복수급자 관리(연계)]-2019년-조회 클릭



- ② 조치유형, 조치완료, 환수여부, 환수상태, 환수대상기간(시작), 환수 대상기간(종료), 환수금액, 조치내용란에 결과 입력
- * 조치일자는 데이터 저장시 자동 입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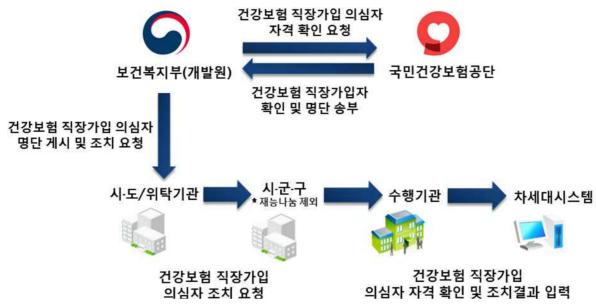
- 재능나눔 활동
- ① 재능나눔 시스템-사후관리-중복수급자관리-2019년-조회 클릭
- ② 조치완료, 조치내용란에 결과 입력



다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- (관리방법) 차세대시스템을 통한 직장가입 관리 실시
 - * 공익활동·사회서비스형·시장형사업단 연 6회, 재능나눔 활동 연 3회 점검(필요시 점검 횟수 증가 검토)
 - ** 건강보험 직장가입 조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점검 시 별도 안내 예정

○ (점검절차)



구분 점검절차 보건복지부(개발원) -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- 직장가입 의심자 자료 송부 - 직장가입 의심자 점검 계획 통보 및 명단 차세대시스템* 게시 보건복지부(개발원) *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건강보험자격사항관리-회차-조회 - 직장가입 의심자 점검 계획 시·군·구 안내 및 조치 요청 시·도 * 재능나눔 활동은 해당없음 시·군·구/위탁기관 - 직장가입 의심자 점검 계획 및 명단 수행기관 안내 및 조치 요청 - 참여자 자격 확인 및 조치결과* 차세대시스템 입력 수행기관 *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건강보험자격사항관리에 조치결과 입력

* (재능나눔 활동) '19년도부터 시스템상(온라인)에서 의심자 명단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가능

** 조치방법 참조

○ (조치방법)

- 1)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심자를 통해 [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] 징구
-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취득·상실에 대한 과거내역이 모두 나오도록 제출
- 의심자 전원에 대한 <mark>자격득실확인서 구비</mark>(현장점검 등 중점 확인)
- 2) 참여자의 사업 참여기간과 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 상실 기간 확인
- 3) 정당참여인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일과 민간기업 혹은 타재정일 자리 참여일과 비교 증빙자료 구비 필요(실제 미활동(근무)한 증빙 확인)
- (예) 민간기업 출근부, 타재정일자리 출근부(활동부), 수요처 및 수혜자 확인서 등
- 3) 참여기간과 직장가입 기간 중복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
- 적정 처리여부에 대하여 '19년 공익활동 평가지표 반영 예정

구분	대상	조치방안
사업 참여기간과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	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* 지역가입자 포함임의계속가입자	- (적격) 계속참여
	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중 자체사업단 가입자	- (적격) 계속참여
사업 참여기간 과 건강보험 가입기간 이 중복되는 경우	참여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<u>실제</u> <u>활동시간이</u> 중복되지 않은 경우	- (부적격) 당해연도 해당 사업 중도포기 조치 및 2년간 사업 참여 중점관리 * 동일 사업 재참여 불가 - 활동비(임금) 미환수 * 단, 직장가입 의심자 명단(시스템) 게시일 기준 이후 활동비 지급 불가 □ 의심자 명단 시스템 게시일(227.) 참여자 활동일 (220.~229.) □ 활동비 지급은 220.~227.(게시일까지만 지급 가능 * 활동일(시간) 비교 증빙자료 구비 필수
0171201	참여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<u>실제</u> <u>활동시간</u> 이 중복되는 경우	- (부정수급) 당해연도 해당 사업 참여중단 및 익년도('19년) 사업 참여 제한 - 부정수급 기간 활동비(임금) 환수 * 참여자가 활동비(임금)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사업 참여 금지 - 차세대시스템-참여자관리-사업제한 등록
	건강보험 가입 사업이 재정지원일자리인 경우 (예시) 공공근로 등	타재정일자리 중복참여에 해당세부조치 방법은 타재정일자리 중복 참여 매뉴얼 참조

○ (대상자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방법)

- ① [차세대시스템]-[사후관리]-[건강보험자격사항관리]-2019년-회차 선택-조회 클릭
- ② 직장가입여부, 부적격여부, 조치결과, 환수여부, 환수금액, 사유 및 비고란에 결과 입력



붙임1

시스템 조치결과 작성 예시

○ 공익활동・사회서비스형・시장형사업단

구분	조치일자	조치유형	조치완료	환수여부	환수상태	환수대상 기간(시작)	환수대상 기간(종료)	환수금액	조치결과
적격		계속참여		미체크	미환수	미입력	미입력	미입력	정당참여 사유(예시:출입국 기간 미활동으로 정당참여)
부적격	자동저장	중도포기		미체크	미환수	미입력	미입력	미입력	부적격 조치결과 (예시:기초연금보장 책정으로 중도포기)
부정 수급		중도포기		체크	환수완료 환수예정	2019-01-28	2019-02-23	270,000원 (환수예정 금액포함)	부정수급 조치결과 (예시: 해외출입국 기간 중 활동일지 허위작성으로 중도포기)

○ 재능나눔 활동

구분	조치일자	조치유형	조치완료	환수여부	환수금액	환수일자	조치내용
적격		계속참여		미체크	미입력	미입력	정당참여 사유(예시:출입국 기간 미활동으로 정당참여)
부적격	자동저장	중도포기	체크	미체크	미입력	미입력	부적격 조치결과(예시:기초생계급여 책정으로 중도포기)
부정수급		중도포기		체크	270,000원 (환수예정 금액포함)	2019-00-00	부정수급 조치결과 (예시:활동일지 허위작성으로 중도포기)

붙임2 출입국 관련 조치방법 및 증빙자료 구비 안내

□ 조치방법

- ① 참여자·출입국관리사무소·해당 지자체를 통해 출입국 사실 확인 (출입국확인서, 여권 내용 등)
- ② 출입국 일자와 활동일지 일자 중복 확인(해당 수행기관)

2-1 출입국 일자와 활동일지가 겹치는 경우

- (부정수급) 해당기간 활동비 환수 및 당해연도 참여 중단, 2년간 사업 참여제한
- * 차세대시스템 [참여자]-[참여자관리]-[해당참여자더블클릭]-[참여제한]-[자격제한등록]-[사유입력]-[저장]
- 차세대시스템 [사후관리]-[부적격/부정수급 조치]-[조회]에서 중도 포기 및 화수여부 등 조치결과 전산 입력
- * (예) 조치결과 :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도포기

2-2 출입국 일자와 활동일지가 겹치지 않는 경우

- (적격) 정당참여
 - * 차세대시스템 [참여자]-[사업별 참여자 관리] [활동중단관리]에서 출입국 기간 입력
- 차세대시스템 [사후관리]-[부적격/부정수급 조치]-[조회]에서 계속 참여 조치결과 전산 입력
- * (예) 조치결과 : 미활동 일자에 출입국, 정당참여

□ 증빙자료 구비 안내

구분			조치방법				
	- 참여자를 통해 사후관리의 정보와 해외출입국 기간 확인 - (예시)						
	성명	변동유형	변동일자 (실제 출·입국 일자)	수신일자 (차세대시스템상에 데이터를 올린 일자)			
 사후관리를 통해	홍길동	출국내역	2019-02-01	2019-02-02			
	홍길동	입국내역	2019-02-03	2019-02-04			
출국정보와 입국정보가 모두 조회되는 경우 (출국정보 1건, 입국정보 1건 총 2건 확인되는 경우)	일자와 비 - 해당 기	^교 간이 일치	하는 경우 <u>사후관리의</u>	일지의 '19.02.01. [~] 19.02.03. 출입국정보 캡처 후			
	보관(캡처화면을 증빙으로 대체함) * 추가 증빙 구비하지 않아도 됨						
	- 단, 사후관리정보와 출입국기간이 불일치하거나 출입국 당일 활동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구비						
출국정보 또는 입국정보 중 1가지만	- (예시)						
조회되는 경우	성명	변동유형	변동일자 (실제 출·입국 일자)	수신일자 (차세대시스템상에 데이터를 올린 일자)			
	홍길동	출국내역	2019-02-01	2019-02-02			
출입국 당일 활동한 경우 (예시) 오전에 활동 후 오후 비행기로 출국한 경우 등	- 해외 출·입국 <u>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</u> 구비(출입국확인서, 여권사본, 항공권 등 중 1개) - 단, 출입국 당일 활동한 경우에는 <u>시간까지 확인 가능한 증빙 구비</u> 필수(항공권 등) * 출입국확인서의 경우 발급비용이 부가됨으로 여권사본 또는 항공권 등 사용 권장						

참여자 활동중단 전산처리 방법

□ 참여자 활동중단 안내

- 건강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, 중단 사유 작성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45일 이내 활동중단 가능
 - *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51p 참조

□ 전산처리 방법

① [차세대시스템]-[사업별 참여자관리]-"참여상태"는 그대로 두고 활동 중단 대상자 체크



② 왼쪽 상단의 [활동중단관리] 메뉴 클릭



- ③ 왼쪽 하단 [행추가]-[활동중단(시작일), 활동중단(종료일) 입력]-[활동중단 사유* 선택]-[저장]
 - * (활동중단 예시) 건강, 여행, 가사, 개인사정, 기타
 - ** (예) 참여자 해외 출입국의 경우 활동중단(시작일)은 출국일, 활동중단(종료일)은 입국일로 입력
 - 단, 1회당 최대 입력가능 일수는 15일이며 연속하여 45일을 중단할 경우 15일씩 3번 입력 가능



붙임4

부적격 및 부정수급자 전산처리 방법(참여제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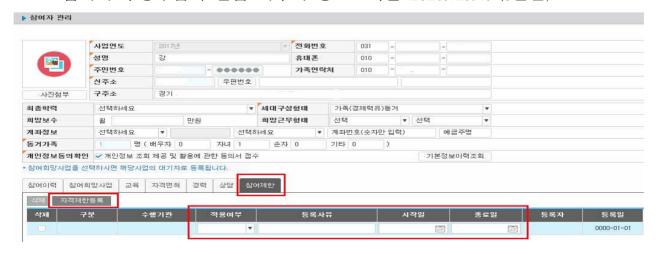
① **(부적격)** 참여자 상태변경 : 차세대시스템-참여자-사업별참여자관리에서 참여자 참여상태 "참여"→"중도포기"로 변경



- ② (부정수급) 참여자 사업참여 제한 : 차세대시스템-참여자-참여자관리-해당 참여자 더블클릭 후 "참여제한"-"자격제한등록"에서 사유 입력
 - * 사유 : 2019년 출입국일자와 활동일 중복으로 인한 부정수급



- (사업참여 제한기간) 참여자 중도포기일~2019.12.31.
- * 참여자 부정수급액 반납 거부시 중도포기일~2023.12.31. (5년간)



붙임5 시후관리 처리 부정적 사례

□ [사례 1] 자격변동 후에도 참여자를 계속 참여시킨 경우

① 사후자격 상실 후 재취득 전까지 중도포기를 시키지 않고 활동만 중단한 경우(적격→자격상실→재취득인 경우)

	- 자격변동 시 즉시 참여자 "중도포기"처리			
조치방법	⇨ 자격 재취득(재연계) 후 타 사업으로 재참여 허용			
	* 자격변동 시점부터 사업참여가 중단되며 반드시 중도포기 처리하여야 함			
제재사항	수행기관 "기관주의" 또는 "경고"에 해당			

□ [사례 2] 사후관리 조치정보와 참여자상태 불일치

- ① 사후관리에는 "중도포기"로 입력하였으나 참여상태가 "참여"인 경우
 - i) 사후관리만 "중도포기"로 처리하고 사업에 "계속참여"하고 있는 경우
 - ii) 실제로 사업참여는 중단하였으나 참여상태만 미처리한 경우(전산 수정 누락)

	- 사업별참여자관리에서 참여상태를 "중도포기"로 처리
조치방법	- 차세대시스템-사후관리-부적격/부정수급관리를 통해 조치결과 입력
	* 중도포기 대상인 참여자가 계속참여하여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부적격에 해당
제재사항	i) "기관경고" 에 해당
	ii) "행정적 시정" 또는 "기관주의" 에 해당

□ [사례 3] 활동일지 허위 작성 시 수행기관 조치 부적정

- ① 자격변동, 해외 출·입국시 활동일지 허위 작성하여 해당기간 활동비만 환수하고 계속참여 시킨 경우
- ② 익월 활동비에서 미활동 기간의 활동비를 상계처리하고 계속참여 시킨 경우

								조치정	병보
참여상태	중도포기사유	참대시작일 💠	참대종료일 💠	조치일자	조치유형	조치완료	환수대부	환수금액	조치내용
참며		2016,01,25	2016, 12, 31	2016, 06, 10	계속참대	P	P	40,000) 근무상황부와 참여자본인 확인 후 해당날짜 환수함
참며		2016,04,01	2016, 11, 30	2016, 06, 07	계속참며	Ø	Ø	30,000) 활동비 환수(7월5일)
참며		2016, 03, 04	2016, 12, 31	2016, 06, 09	계속참여	P	P	30,000) 미활동 지급액 환수, 보고 및 일지 허위기재에 대한 경고
참며		2016, 02, 01	2016, 12, 16	2016, 05, 30	계속참며	P	P	48,000) 5월25,26,27 3일간 급여 48,000원 과지급금 환수조치 6/17
참여		2016, 03, 01	2016, 11, 30	2016, 06, 03	계속참여	Ø.	P) 활동일자에 포함되지 않음, 해외며행으로 민한 활동일시 중단

	- 참여자 사업 참여중단 및 부정수급 시점부터의 활동비 전액 환수
	- 참여자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
조치방법	* 허위 작성으로 인해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시점이후의 모든 활동은 부정수급에 해당
	** 허위 작성(부정수급) 기간동안 활동비 환수, 활동비 미반납시 5년간 사업 참여제한
	→ 계속참여 시키거나, 익월 활동비에서 상계처리 불가
제재사항	"기관주의" 또는 "기관경고"에 해당

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및 신청서

- (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)
- 수행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**잘못 입력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**, **단순 오입력**의 경우 참여자를 새로 등록 및 자격연계 재실시
 - * 자격연계 실시 후 부적격 참여자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 즉시 중도포기 조치

구분

변경절차

수행기관

-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변동 확인
-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송부
- * 법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부분만 변경 가능
- ** 재능나눔 활동은 변경신청서 및 공문(증빙자료 포함) 수행기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정보통계부 업무지원)으로 송부

₱

지자체

-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공문 및 변경신청서(증빙자료 포함*) 송부
- * 공문 송부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송부(초본 등)
- 해당 파일 암호화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전화 (031-819-0799) 유선 통보 및 이메일 송부(kordi@kordi.go.kr)



한국노인인력개발원 (정보통계부)

- 공문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

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

ą	성정구역	(시도) (시군구)
참(여자 성명	
변경 전	주민등록번호	
변경 후	주민등록번호	
사업	수행기관	
뱐	년경사유	법적 주민등록번호 변경
<u> </u>	투이사항	
	담당자 성명	
요청자 (지자체)	소속기관	
	전화번호	

* 해당 파일 암호화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전화(031-819-0799) 유선 통보 및 이메일 송부(kordi@kordi.go.kr)

2019년 월 일

신청자: (서명)